

< 2026년 수출입통관절차개정사항 - 교재순 >

● 관세법령 전체 ★★ - 타법 개정 (변경)

개정 전	개정 후
1. 기획재정부령 --> 2. 기획재정부장관 --> 3. 기획재정부 --> 4. 통계청장 --> 5. 산업통상자원부 --> 6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--> 7. 환경부 --> 8. 특허청 -->	1. 재정경제부령 2. 재정경제부장관 3. 재정경제부 4. 국가데이터처장 5. 산업통상부 6. 산업통상부장관 7. 기후에너지환경부 8. 지식재산처

● 교재 19페이지

③ 근로날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-->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

● 교재 37페이지 ★★★

-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등의 금액을 수령하고, 수입신고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, 앞으로는 관세등의 금액만 수령해도 연대납부책임을 부여함.

개정 전	개정 후
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(이하 "구매대행업자"라 한다) 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,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. -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a.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b.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	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(이하 "구매대행업자"라 한다) 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-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a.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b.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

● 교재 72페이지

-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

개정 전	개정 후
<p>2) ①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사유</p> <p>①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</p> <p>②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품목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</p>	<p>2) ①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사유</p> <p>①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</p> <p>②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품목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</p> <p>③ 제86조제2항(품목분류사전심사)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㉠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㉡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</p> <p>㉠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전날까지</p> <p>㉡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</p>

● 교재 111페이지

개정 전	개정 후
<p>③ 지정기간</p> <p>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③ 지정기간</p> <p>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</p>

● **교재 113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(4)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, 언어장애인, 지체장애인, 만성신부전증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</p> <p>(5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·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</p>	<p>(4)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, 언어장애인, 지체장애인, 만성신부전증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</p> <p>(5) 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</p> <p>(6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·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</p>

● **교재 114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(18)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</p> <p>-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1)가)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.</p>	<p>(18)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</p> <p>-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1)가)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.</p> <p>(19)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</p>

● **교재 139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자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 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)</p>	<p>자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)</p>

● **교재 174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(1) [별표 5]에 열거된 물품(이하 “특정물품”이라 한다)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(이하 “특정세관”이라 한다)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.</p> <p>다만,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(1) [별표 5]에 열거된 물품(이하 “특정물품”이라 한다)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(이하 “특정세관”이라 한다)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수입신고전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</p> <p>2.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</p> <p>3.신고지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분석결과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로서 수리 전 신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</p>

● **교재 192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바. 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</p> <p>아.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</p>	<p>바. 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(수입신고 란기준)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(목록통관 물품은 제외)</p> <p>아.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</p> <p>자.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</p>

● **교재 195~6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4.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가. 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제1호·제2호와 제15호(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9호·제22호 해당 물품에 한함) 해당물품</p> <p>나.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</p>	

<p>다.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라.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마.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바.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사.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아.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물품 자.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차.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카.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 타.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</p> <p>5. 부과고지 대상물품(다만,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산화물은 제외한다)</p> <p>6. 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(다만,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</p> <p>7.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.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8.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</p>	<p>4. 부과고지 대상물품(다만,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산화물은 제외한다)</p> <p>5. 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(다만,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</p> <p>6.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세관장이 수입물품 심사·검사를 위해 종이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.</p> <p>7.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</p> <p>8.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
--	---

● **교재 206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.</p>	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「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.</p>

● **교재 214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① 세관장은 총톤수 2,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하여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할 수 있다.	① 제82조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하여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할 수 있다.

● **교재 214~215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① 총톤수 2,000톤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제8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신고수리 후 원형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신고수리 후 60일 이내에 추가로 수입신고해야 하며, 신고 시에는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, 신고서 비고란에는 “신고번호 ○○○○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 대상물품 추가신고분”이라고 기재해야 한다.	① 제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제8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신고수리 후 원형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신고수리 후 60일 이내에 추가로 수입신고해야 하며, 신고 시에는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, 신고서 비고란에는 “신고번호 ○○○○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 대상물품 추가신고분”이라고 기재해야 한다.

● **교재 215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“공동어업사업”이라 함은 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.	“공동어업사업”이라 함은 「원양산업발전법」제6조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.

● **교재 240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4.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국내제조 HS 제72류 철강류(웨이스트, 스크랩 등 HS 제7204호 물품 제외)	4.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국내제조 물품 가. HS제72류 철강(웨이스트, 스크랩 등 HS 제7204호 제외) 나. HS제7304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품

● **교재 241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.</p>	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.</p>

● **교재 242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400만원(FOB 기준)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	<p>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500만원(FOB 기준)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

● **교재 251페이지**

개정 전	개정 후
<p>④ 법 제143조에 따른 선박(항공기)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(기)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또는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적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적재물품 또는 적재사실 확인 자료를 대조·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등록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</p>	<p>④ 법 제143조에 따른 선박(항공기)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적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적재물품 또는 적재사실 확인 자료를 대조·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등록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제무역선(기)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2.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